

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-9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8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거주기간 제한으로 인해 예방접종을 연기하는 동안 대상포진 감염병이 발병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마포구 1년 이상 거주 조항 삭제(안 제2조)

나. 전액 지원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으로 변경(안 제3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 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25. 7. 10.~7. 30.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- 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1년 이상 거주한”을 “거주하는”으로 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접종지원”을 “접종 지원”으로, “전액 지원”을 “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”으로 한다.

별지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예 방 접 종 비 용 환 수 대 장 (제6조 관련)

번호	피접종자 인적사항					예방접종 실시 내용					환수조치 불가사유
	일자	성명	생년 월일	주 소	연락처	접종명	백신제조 번 호	접종 일시	접종자	예 진 의사명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지원대상) ① 대상포진 예 방접종(이하 “접종”이라 한 다)의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 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 록을 두고 <u>1년 이상 거주한</u> 65 세 이상으로 「국민기초생활 보 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 되,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 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다.		제2조(지원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거주하</u> <u>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		
② (생 략)		② (현행과 같음)		
제3조(지원내용) <u>접종지원</u> 은 예 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<u>전</u> <u>액 지원</u> 할 수 있다.		제3조(지원내용) ① <u>접종 지원</u> --- ----- <u>전액</u> 또 <u>는 일부를 지원</u> ----- -----.		
② (생 략)		② (현행과 같음)		

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가. 조례안 제2조(지원대상)
- 나. 조례안 제3조(지원내용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2항

3. 미첨부 사유

- 가. 연평균 1억 미만의 예산 범위에서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

- 2025. 6. 11. 기준 미접종한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수: 2,303명
- 2024년 접종률 38% 적용
- 접종 예상 인원 수: 875명
- 예상 비용: 875명 x 96,280원 = 84,245천원
- ※ 참고) 2025. 6. 11. 기준 지원 건수 162명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보건소 건강동행과 오은혜
연 락 처	02-3153-9074